

서면답변서

소 속	평 창 군 의 회	질문위원	이 만 재 위원
답 변 자	평 창 군 수 (산림과장)	답변일자	2006. 11. 30
회 의	제13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질문요지

- 대화면 개수리 산128번지 수해복구 토사채취 허가현황

답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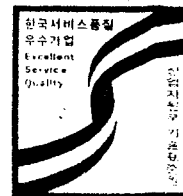
- 불임참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요구자료명	○ 대화면 개수리 산128번지 수해복구 토사채취에 대한 산림형질변경허가관련서류 사본일체	요구번호 173
<p>□ 대화면 개수리 산128번지 수해복구 토사채취허가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대화면 개수리 산128번지 ○ 허가면적 : 23,610m² ○ 허 가 자 : 이상익(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77-6 방이동그린파크아파트 13층-1) ○ 허가기간 : 2006. 09. 29. ~ 2007. 03. 31. ○ 토 사 량 : 188,391m³(마사토) ○ 복 구 비 : 341,392천원 ○ 용 도 : 긴급수해복구용 <p>□ 허가서류사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임참조 		



SEOUL GUARANTEE INSURANCE COMPANY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증권번호 제 118-051-200600000767 호

보험계약자	이상익	피보험자	581-83-90004 평창군수
보험가입금액	금 參億四仟壹百參拾九萬貳仟 圓整 ₩341,392,000-	보험료	₩4,298,360-
보험기간	2006년 09월 29일부터 2008년 01월 31일까지 (490일간)		
보증내용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보증		
특별약관	※해당사항없음		
특기사항	※허가받은 권리의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인이 예치한 보증보험증권은 양수인 명의의 신규증권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허가권자가 복구설계서를 승인한 경우,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만료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행정행위내용 종류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 조건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 인.허가기간 2006년09월29일부터 2007년03월31일까지 인.허가장소 대화면 개수리 산128번지 인.허가번호 인.허가 또는 영업보증금액 ₩341,392,000-			

우리 회사는 인.허가보증보험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인.허가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실하므로 그 증으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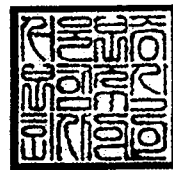
※ 증권발급 사실 확인 안내

발급부서: 118 잠실지점
 부서장: 임동환
 담당자: 조홍채
 전화번호: 02-3434-0021
 주소: 서울 송파구 신천동 7-25(월드타워11층)
 취급 대리점: J56 열매 02-412-0021

2006년 09월 2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장

김기후



연하세(일) 남부(남입) 영수증(자납) 분) (일) ...

계좌번호: 76091010300120060933300000372 연하세액: 18000원 연하세일: 2006.10.12

납부인: 이상익 귀하(귀중) 계좌번호: 440628-*****

주소: 강원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산 128

과목명: 토사채취

구분	과목명	과목액	세액	합계금액
연하세		18000	0	18000
		18000	0	18000

2006. 09 월 27 일

담당자: 김경희 문의전화: (038)330-2535

“2014동계올림픽은 강원도 평창에서!”



평 창 군



수신자 이상익 귀하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77-6 방이동
그린파크@ 13층-1)

(경유)

제 목 토사채취허가 통보 및 허가증 교부안내(이상익)

1. 산림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수해복구용 목적으로 토사채취허가 신청하신건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한바 원의 타당하여 산지관리법제3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제40조제3항 규정에 의거 허가하고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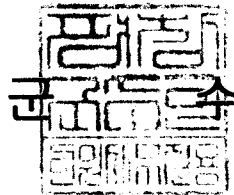
3. 산지복구비용을 기일내에 납부하시고 허가증 수교후 작업착수하시기 바라
며.

4. 특히 불임 허가조건,유의사항,타법령에 의한 인허가 이행준수 및 재해예방, 산지복구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림복구는 반드시 사전 복구설계서를 제출 하여 승인을 득한후 설계서대로 시공하시고 준공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가.허가증 “안” 및 허가조건1부

나.유의사항 및 복구비예치통지서1부 끝.

평 창 군



수신자

지방임업서기보 이남기

산림관리담당 이근호

산림과장 김남식

전결 09/26
부군수 김명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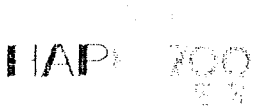
협조자

시행 산림과-12045 2006.09.26 접수
우 232-807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본관4층
전화 330-2425 전송 033)330-2591 / 5hanlim@hanmail.net

/ <http://www.happy700.or.kr>

/ 공개

"2014동계올림픽은 강원도 평창에서!"



평 창 군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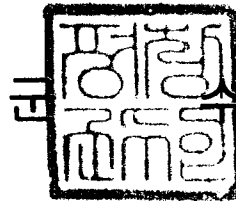
제 목 토사채취허가사항 알림

1.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산128번지 토사채취허가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토사유출 및 재해우려, 연접지 경계침범 등 위법사항 발견시 우리과 (산림과)로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허 가 자	허 가 지	허가면적 (m ²)	허가목적	허가기간	비 고
이 상 익 (011-470-4565)	대화면 개수리 산128	23,610	긴급수해복구용 토사채취	2006.09.29. ~ 2007.03.31	

끝.

평 창 군



수신자 환경복지과장, 대화면장

지방임업서기보 이남기

산림관리담당 이근호

산림과장 김남식

전결 09/26
부군수 김우철

협조자

시행 산림과-12045

2006.09.26

접수

우 232-807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본관4층

/ <http://www.happy700.or.kr>

전화 330-2425

전송 033)330-2591

/ 5hanlim@hanmail.net

/ 공개

토 석 채 취 허 가 증

허가를 받은자	①성 명	이 상 익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77-6 방이동그린파크@ 13층-1		
산 지 소유자	④성 명	이 상 익	⑤주민등록번호	
	⑥주 소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77-6 방이동그린파크@ 13층-1		
⑦산 지 소 재 지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산128번지		
⑧별 채 구 역 면 적		23,610 m ²		

⑨토 사 허 가 내 용	토사채취장	23,610 m ²	입 목 재 적	수종별	본수(본)	재적(m ²)
	산물처리장	m ²		소나무외1	729	66.39
	진 입 로	m ²				
	관리사무실	m ²				
	기 타	m ²				
	합 계	23,610 m ²				
	종류 및 수량	마사토, 188,391 m ³				
	반출기간	2006. 9. 29. - 2007. 03. 31.				
	채취방법	인력 및 장비				
	용 도	긴급수해복구용 토사채취				

산지관리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제5항(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토사채취허가(연장허가)를 합니다.

2006년 09 월 26 일

평 창 군 수 인

허 가 조 건

1.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 허가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작업에 착수하고 착수일자를 기재한 작업착수서를 평창군(산림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중 작업을 중지하거나 재개한 때에는 즉시 작업중지일자 또는 재개일자와 그 사유를 기재한 작업중지서 또는 재작업착수서를 평창군(산림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산지의 복구를 위하여 미리 복구비를 예치하된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차년도 이후의 복구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발부하는 복구비예치통지서에 따라 예치한 후에 굴취·채취하여야 합니다.
4.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의 만료일전이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분적인 복구작업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예치된 복구비는 복구설계서에 따라 복구를 완료한 후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복구상황을 확인하고 완전히 복구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환하며 기간내에 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치된 복구비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복구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6. 허가를 받은 사람은 채석으로 인하여 발생할 재해에 대하여 사전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7.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적지복구를 완료한 때까지 허가구역 및 그 연접한 산지의 피해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8.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주위에 잘 보이도록 여러 개의 적색위험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9. 허가구역 입구에 다음과 같은 표지판을 설치하되, 그 규격은 가로 90센티, 세로 60센티미터, 높이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 임야구분	: 사유림
2. 채취장소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산128번지
3. 허가연월일 및 번호	: 2006.09.26. 허가번호 2006-18호
4. 허가자	: 평창군수
5. 허가를 받은 자	: 이상익
6. 허가면적	: 23,610 m ²
7. 토사채취수량	: 마사토, 188,391 m ³
8. 토사채취용도	: 긴급수해복구용 토사채취
9. 허가기간	: 2006.09.29. - 2007. 03. 31.

10. 허가를 받은 사람은 위의 각 항외에 관계법규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채취한 산물의 반출은 허가기간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반출을 완료한 때 또는 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즉시 채취 및 반출토사의 수량조서와 허가증을 첨부한 반출종료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토사채취 허가지와 연결된 경계(완충구역 포함)를 침범해서 산지전용해서는 안됩니다.
13. 허가를 받은 자는 토사채취로 인하여 발생할 위해에 대하여 사전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4. 토사유출방지시설·낙석방지시설·옹벽·침사지(沈砂池) 및 배수시설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15. 그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6. 토사채취허가와 관련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7. 토사채취허가와 관련하여 타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됩니다.
18. 토사채취허가지내 생립된 임목은 조경수목으로 존치 또는 벌채하여야 하며 굴취 및 토사를 타 용도로 부산물 생산량을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19. **기타 타법에 의하여 인·허가(신고포함)사항에 대하여는 사전(공사시행전)에 인·허가(신고)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20. 허가사항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변경허가를 득한 후 사업 시행해야 합니다.
21. (어구해석) 본 허가조건(유의사항)의 어구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는 허가권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22. 채취방법은 채취지역의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계단식으로 채취(복구)해야 합니다.(경관 유지를 위하여 차폐림 등 차폐시설을 설치해야 함)
23. 토사채취로 인한 인접지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안쪽으로 너비 10미터의 완충구역을 설정해야 하며, 이 경우 동 구역 안에서는 채취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24. **자연재해대책법 제52조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예방에 관하여 ⇒ 우기시 토사유출로 하류지역의 농업용 시설등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되므로 가침사지,도수로등을 반드시 설치
 - 정성토면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대책에 관하여 ⇒ 사업계획과 일치하게 나무심기, 줄파종, 산마루측구 정비등이 반드시 이행

유 의 사 항

1. 허가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산지전용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 허가를 받은 사람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산지를 전용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할 재해에 대비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사람은 산지전용허가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구공사를 착수 전에, 산지전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된 후 15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대로 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5. 산지전용된 산지의 복구비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부담하여 복구하여야 합니다.
6.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산지전용기간중이라도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7.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후 기간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치된 복구비(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등을 포함합니다)로 대집행합니다.
8.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 나.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한 경우
 - 다.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산지관리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소된 복구비를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라.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마. 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 제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바. 그 밖에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9.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NO. 제 호

복구비에치통지서

1. 위 치 : 대화면 개수리 산128번지
2. 면 적 : 23,610 m²
3. 허가신청(신고)자
 - 가. 성 명 : 이 상 익
 - 나.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77-6
방이동그린파크@ 13층-1
 - 다. 주민등록번호 :
4. 복구비용 예치내역
 - 가. 예치총액 : ₩341,392,000원
 - 나. 이번에 예치할 금액:₩341,392,000원
5. 납부 기일·장소
 - 가. 납부기일 : 2006.10.26일까지
 - 나. 납부장소 : 평창군청 산림과

산지관리법제38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를 예치할 것을 통지합니다.

2006 년 09월 26일

평 창 군 수

※ 단,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시는 허가(협의)기간을 증권 발부일부터 ~ 2007. 03. 31일로, 보험기간은 증권 발부일부터 ~ 2008. 01. 31일자로 하여 증권으로 발부하여 예치하여야 합니다.

NO. 제 호

복구비에치영수증

1. 성 명 : 이 상 익
2.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77-6
방이동그린파트@ 13층-1
3. 주민등록:
번 호
4. 복구비에치금액: ₩341,392,000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06 년 월 일

평 창 군 수